진양에프엔에스㈜

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23, 2층(효재빌딩)

TEL : 02-431-0730 /FAX : 02-431-8149

Home Page : www.jy-tech.co.kr

2022.12.01 시행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기동용기함, 과압배출구 등의 적용, 설치에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드립니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저장용기	방호구역 외 설치	방호구역 외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	
기동용기	제한없음	N2 5L 기동용기사용	용량과 내압시험압력을 규정, N2 기동용기 사용유도
	제한없음	7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적용시, 기동용기는 2개이상 설치	모듈러 등 설계시 주의
과압배출구	손상우려 장소에 설치	의무설치	

- 적용기준 : 2022년 12월 01일 이전의 건축허가, 소방 착공신고를 완료한 경우, 종정의 기준을 적용